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 7차 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한 단축 등 〉

■ 임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644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임미애의원 등 17인
- (2) 제 안 일 : 2024. 9. 4.
- (3) 회 부 일 : 2024. 9.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품의 판매대금 지급기한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납품·위탁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40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하는 경우에는 60일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가 위 현행법 규정을 근거로 납품업자에게 공급받거나 직매입하는 경우 상품의 판매대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상품의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축하고, 상품 판매대금을 별도관리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직매입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로, 신선농·수·축산품의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로 각각 단축하고, 상품판매대금의 100분의 50 이상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8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직매입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로, 신선농·수·축산품의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로 각각 단축하고, 상품판매대금의 100분의 50 이상 별도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u>40일</u>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대규모유통업자는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u>60일</u>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u><신설></u>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① ----- ----- ----- ----- <u>10일</u>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 <u>7일</u>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신선농·수·축산물인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품

현행	개정안
③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대규모유통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 ----- ----- ----- ----- ----- -----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 -----. 제8조의2(상품판매대금의 보호)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1. <u>신탁</u> 2. <u>예치</u> 3.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계약의 체결</u> ② <u>대규모유통업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한 상품의 판매대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u> ③ <u>제1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별도관리하는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상품의 판매대금을 운용하여야 한다.</u> ④ <u>대규모유통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상품의 판매대금이 판매된 상품을 제공한 납품업자등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u> ⑤ <u>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상품의 판매대금을 상계 또는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⑥ <u>대규모유통업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상품의 판매대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u>

현행	개정안
	<u>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⑦ 관리기관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상품의 판매대금을 납품업자등의 청구에 따라 해당 납품업자등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품업자등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u> <u>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u> <u>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u>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u> <u>⑧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규모유통업자 등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u> <u>⑨ 관리기관은 그 관리기관이 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u>

현행	개정안
	<u>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상품의 판매대금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상품의 판매대금을 제1항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하여야 한다.</u> <u>⑩ 상품의 판매대금을 별도관리한 대규모유통업자는 관리기관이 제7항에 따라 상품의 판매대금을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납품업자등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u> <u>1. 납품업자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u> <u>2.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화등의 대금에 관한 정보</u> <u>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납품업자등의 청구에 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u> <u>⑪ 상품의 판매대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납품업자등, 그</u>

현행	개정안
	<u>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의 판매대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u> <u>⑫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상품의 판매대금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u> <u>⑬ 별도관리하여야 하는 상품의 판매대금의 범위 및 산정방법,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상품의 판매대금 관리 상황 점검 방식, 그 밖에 상품의 판매대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현행법은 제8조는 납품업자로부터 납품·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그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¹⁾, 지연지급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에 따른 이자는 연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고시하고 있음²⁾.

○ 그런데, 2021년 동법 개정으로 직매입거래의 대금지급기한이 도입되었는데, 이후 일부 업체가 현행법을 근거로 정산주기를 연장한 사례가 있었음³⁾.

○ 이에 개정안은 특약매입, 매장임대, 위수탁거래에서의 판매대금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직매입하는 경우에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선농·수·축산품의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상품판매대금의 50% 이상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하여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2.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3.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② 대규모유통업자는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대규모유통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1.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상품판매대금등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판매대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쿠팡은 최대 정산기한이 50일이었으나 2023년 1월부터 60일로 변경하였고, 마켓컬리는 올해부터 최대 정산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변경함(쿠팡·마켓컬리의 '60일 정산기한'은 정당한가?, KBS, 2024. 8. 28. 보도)

○ 다만, 직매입거래 정산기한의 단축으로 인해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유리한 거래방식⁴⁾인 직매입거래를 기피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신선농·수·축산물에 대하여 현행법은 그 상품의 유통기한이 짧은 특성에 감안하여 감액, 반품에 있어 특칙을 부여하고 있으나⁵⁾ 대금의 정산기한까지 일반 제품, 일반 농·수·축산물과 다르게 볼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직매입거래는 미판매상품(재고)에 대한 책임 및 상품과 관련된 보관비용, 멸실·훼손비용, 보험 비용 등도 모두 유통업체가 부담하므로 납품업체에게 유리함.

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신선농·수·축산물”이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지닌 신선상태의 농산물·수산물·축산물로서 건조·염장 등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제7조(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르거나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상품대금을 감액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상품대금의 감액이 신선농·수·축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특약매입거래의 경우로서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2. 위·수탁거래의 경우

3.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4.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5. 대규모유통업자가 반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해당 납품업자에게 반품의 동의를 받은 경우

6.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신선농·수·축산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7.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반품받은 상품을 가맹본부가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9. 그 밖에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선농·수·축산물의 반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적정한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납품업자 보호 강화 필요성, 업계의 거래 관행, 매입 형태 별 대금지급 기한 간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실태조사 등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또한, 특약매입, 직매입 등 전통적 소매거래의 경우에는 상품을 외상매입한 경우로서, 거래의 편의를 위해 외상매입한 금액을 예치 등의 절차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거래현실과 맞지 않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4